

소 장

원 고 ㅇ ㅇ ㅇ(ㅇ ㅇ ㅇ)

1900년 0월 0일생

등록기준지: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길 ㅇㅇ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 $\vec{\Pi} \quad \vec{\Delta} \quad \Delta \quad \Delta \quad \Delta \quad \Delta$

1900년 0월 0일생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: 원고와 같음

사건본인 박 ○ ○(주민등록번호)

등록기준지 및 주소 : 원고와 같음

이혼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- 2.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
- 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와 피고는 19〇〇. 〇. ○.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 본인을 두었습니다.

- 2. 피고는 원고와 결혼전 무직으로 생활하다 원고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다 서도 변변한 직업 없이 인근 다방을 전전하면서 그곳에서 만나 알게된 '**
 ○'이라는 여자와 빈번히 외유를 하며 생활하다가 이를 걱정하며 안타까운 마음에"이제 제발 그만하고 가정을 돌보라"는 원고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도리어화를 내며 "니가 내게 뭘 해주었냐"면서 원고에게 윽박지르며 "돈을 내 놓으라"면서 노점을 하며 근근히 벌어온 생활비마저 강취해가 이를 유흥비에 탕진하며 지내 오던 중 19○○. ○. ○. 급기야는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명의로 되어있던 주택청약부금을 해약하고 이에 따른 금액 ○○○여만원의 금원을 가지고 위 '미스 ○'이라는 여자와 함께 행방을 감추고야 말았습니다.
- 3. 이에 원고는 선천적인 착함 탓에 돌아오리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집나간 피고를 기다렸지만 피고는 근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해오지 않고 그동안 백 방으로 피고의 소재를 수소문 해 온 원고로서도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였지만 자녀의 장래 및 자신의 처지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해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1. 갑 제2호증혼인관계증명서1. 갑 제3호증주민등록(말소자)등본1. 갑 제4호증불거주확인서1.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1통1. 소장부본1통1. 납부서1통



2000. 0. 0.

원 고 ㅇ ㅇ ㅇ (인)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척기간	※ 아래(2)참조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제출부수	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 용	・인지액 : 20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 : 당사자수×3,700원(우편료)×12회분		
이혼사유	1.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		

※(1) 제 출 법 원

- 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2.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
※(2) 제 척 기 간

- 1.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: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.
- 2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: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.